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38

발의연월일: 2025. 5. 30.

발 의 자:조인철・박수현・이개호

주철현 • 문진석 • 한정애

박용갑 · 정진욱 · 이해민

이건태 · 허성무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·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에도,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인종·국가·민족·지역·나이·장애·성별·성적지향이나 종교·직업·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·조장·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·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

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7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인종·국가·민족·지역·나이·장애·성별·성적지향이나 종교·직업·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·조장·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·선동하는 내용의 정보
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	
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	<u> 등</u> ) ①		
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
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			
여서는 아니 된다.		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인종·국가·민족·지역		
	·나이·장애·성별·성적지		
	향이나 종교・직업・질병 등		
	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		
	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		
	화・조장・강화하거나 폭력을		
	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	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		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	
	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		
	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		
	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		
	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		